

제433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4.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9. 공소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10.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2.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13. 공소청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 2  |
| 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        | 3  |
|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 | 3  |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                 | 3  |
| 4.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      | 13 |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 13 |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 21 |
|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22 |
| 7.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                  | 40 |
| 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    | 40 |
| 9. 공소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                        | 40 |
| 10.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   | 40 |

|                                                                |    |
|----------------------------------------------------------------|----|
| 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                | 40 |
| 12.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br>..... | 40 |
| 13. 공소청법안(대안) .....                                            | 40 |

(15시31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3월 16일 나경원 위원님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면서 타 상임위 법안 6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7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주세요.

○나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일정은……

○위원장 추미애 진행에 먼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나경원 위원 내용이 다르지요. 안건을 저희가……

○조배숙 위원 아니, 3시에 하겠다고 해 놓고 30분 늦게 왔는데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곽규택 위원 일방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시네, 오늘은 또?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됩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33분)

○위원장 추미애 먼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환율안정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시급히 이 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3항에 있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 양도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기업의 금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 확대를 위해 투자 대상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약칭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 한시적으로 100분의 100까지 상향하고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2026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첫째, 안 제23조제2항은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을 산입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 부분을 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특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경부와 협의해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을 불산입하도록 과세특례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1조의27제1항은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환율 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나 법률 규정만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어 대령에 위임하는 과생상품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시간이 3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무 연락도 못 받고 3시 반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진다는지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작정, 이런 부분이 저로서는 여당이 너무나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윤철 장관님, 지금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내용적인 건 아니고 형식적인 부분인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잖아요, ‘25인 이내’에서 ‘26인 이내’. 그다음에 또 운용심의회 위원회를 보니까 ‘7명’에서 ‘8인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되면…… 항상 무슨 회의체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위촉직이나 이런 데서 이걸 조정해서 홀수 체제로 맞춰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게 짝수로 돼 있어 가지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지금 25인에서 새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생기자 보니까 거기만 이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서 26인으로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26인이 되면 만약에 무슨 의사결정 할 때 13 대 13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짝수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경우는 만약에 27명으로 해 주신다면 27명으로 해서 한 분을 더, 민간위원으로 오시든 그렇게……

○조배숙 위원 한 사람을 더 하겠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위촉직에서 한 명을 뺀다든가 그래서 25인을 맞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임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빼기는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면 27인으로……

빼도록 하겠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짝수로 되면…… 항상 회의체나 위원회는 홀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현안이 아니고요.

부총리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밤을 새워서라도, 휴일을 반납하고라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잘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지원 위원 특히 제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어촌에도 농업용·어업용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만약 폭등하면 농식품·수산물 값이 다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주로 등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면세지만 이 등유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단 비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또 한 가지는 무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 원료가 중국과 중동에서 수입되는데 요소수처럼 그런 파동이 나지 않게끔…… 지난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약 1200억 정도가 편성돼 있던데 이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비료 생산에 드는 요소수가…… 아마 그게 화물차, 산업용 중에서 특히 비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수입 다변화 또는 필요하다면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신다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급합니다, 추경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추경을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국회에서도 잘 심의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부총리님, 요즘 국제경제가 복잡하고 특히 유가 불안으로 인해서 물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특히 국제간의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자금이동 또 주식시장이 요동도 치고 여러 가지 통화관리에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으실 텐데,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이제 임기가 다 돼 가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면 이런 국제간의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통화관리에 있어서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한국은행총재가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유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게 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무엇보다도 부총리님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기획재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정책을 담당해 오셨던 분이요 특히 또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면 통화정책이라든가 물가 관리라는 것은 대한민국국민들 경제생활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또 경제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송석준 위원 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일관성과 전문성, 이것들이 존중받고 국제사회와 서로 원만한 협력·협조,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 좀 얘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위기가 닥을수록 취약계층, 특히 민생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 품목을 아예 스물세 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쌀값이라든지 민생하고 굉장히 관련된 품목을 정해서 품목별로 매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국제사회와 공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일본까지 가서 일본하고 협력하는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아마 4월 중에는 또 IMF·월드뱅크 총회에 가서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이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총재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점이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추미애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비료에 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말씀 올립니다.

부총리님, 우리 비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 연료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암모니아, 인산, 황.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연료의 한 38%, 35만 t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 수급, 현재 우리가 몇 개월분이 비축돼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체크해 본 바로 따지면 당장은 비료 수급이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마 한 3개월 이렇게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체 국가에 한다면지 또 중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중국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한 9개월분가량의 비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가 한 70% 가까이 또 천연가스가 20%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는, 그것도 한 9일분 정도 비축돼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벌써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대체를 찾아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천연가스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될 걸로 보여지고 석유가 좀 오래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서실장이 이번에 UAE 가서 가지고 한 1800만 배럴을 확보해 오고 그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석유를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추경, 신속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니라 작년의 법인세 등 그 재원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다행히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 가지고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활황이 돼서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작년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 법인세 예년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기관에서 한 4배 정도, 한 40조~160조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윤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43조 영업이익이었고, SK하이닉스가 47조가량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평균 법인세가 연간 한 팔십몇 조인데 그게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단 이런 입장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 40조를 금년도 전망했습니다. 그게 한 4배 정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낸드플래시 가격이 더 올라가 가지고, 50%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더 된다는 주장도 하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라든지 또 물류업체라든지 아까 박지원 위원님 말씀한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그

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먼저 아까 의사진행발언 안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안건은 오늘 코로나와 관련된 감사원을 좀 부르자 그런 안건이었고요. 김용민 간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이 채택 안 된 부분은 아쉽다라는, 유감이라는 표시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구윤철 장관님, 지금 환율이 3월 16일에는 1500원이 넘었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란 사태 이후에도 사실 다른 유로나 엔에 비해서 굉장히 폭락 폭이 큰 건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유로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나경원 위원 예, 저희가 좀 더 큼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노출 자산 규모도 워낙 많고.

그런데 구두 개입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두 개입으로 해결할 정도라고 보십니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은 지금 구두 개입은 일본하고 가면서…… 일본에서도 지금 거의 한 160엔 가까이까지 가다 보니까 일본 재무장관하고 같이 좀 이렇게, 당장 못 하더라도 공조를 통한 그런 구두 개입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사실 시장 반응은 별로, 그냥 싸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환율 문제가 결국 민생 물가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별 뽕족한 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통화스와프는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언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시각은 지금 한국이 외환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000억 불 되고요. 정부가 한 4200억 불 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천육칠백억 불—이게 주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이렇게 따지니까 1조가 넘는 국가인데, 달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화스와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첫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은 달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에서 절하될 걸로 보고 또 국민들께서 달러를 보유하려고도 하고 하는 이런, 저희들은 심리의 안정성을 좀 가져오는 게 단계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구두 개입이라는 말이 정부가 여러 가지…… 오늘 주시는 환율안정화를 위한 세법을 빨리해 주시는 게 정부가 안정화를 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유 수입량이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2등, 3등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저도 일본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시다 전 총리도 만나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유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앞으로 원유에 있어서 스와프 같은 것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일종의 경제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제가 일본 재무상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급한 경우에는 또 원유스와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어려우실 텐데, 지금 전쟁 때문에 경제 운용하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재위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정말로 추경이 필요한 건지,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유가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유가 최고가도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오늘 5부제, 말하자면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경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필요하신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저희들이 휘발유·경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도 시장가는 거의 1800원 1870원, 1800원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비해서는 한 200원 정도 올라간 부담입니다. 한테 2주가 지나고 나면 아마 또다시 한번 더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운영하는 분들 경유를 쓰는데 낮은 가격에 하다가 리터당 삼사백 원씩 올라가 버리면 이분들이 운송해 봤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물류·택배업자 이런 분들, 택배를 하는 데 경유·휘발유를 쓰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면……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세금으로 다 보전은 못 하지만 그분들 일부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유류세 같은 경우를 감면하고요 또 일부는 직접으로……

○신동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발생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자꾸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묘하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오늘 대통령 말씀을 보면 ‘소득 지원’, ‘소득 보전’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소위 이란전 때문에 생긴 예산의 부족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분을 미리 추경을 만들어서 이걸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지자체 같은 데 이렇게 막 푸는 방식으로 소위 일종의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값이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결손이 생기면 그것은 그때 다른 재원으로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저는 유가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위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입니다. 아까 농어민들 이런 분들은 당장 고기잡이를 가야 되는데 경유가 너무 올라 가지고……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런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막 추경을 급히 편성해야 될 그런 일인가 싶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분들은 어려움이 지금 당장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피해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이 더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추경을 하시더라도 저는 무슨 전쟁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확 늘려 가지고 선거 앞두고 예산 푸는 방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알뜰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피해 계층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전쟁이 심각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물류가 거의 다 막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물류가……

○서영교 위원 물류가 다 막혔는데 그나마 우리가 비서실장이 가서 좀 확보해서 많이 놀라고 고맙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유통값이 올라갔으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하는 사람들, 화물 하는 사람들은 당장 직격탄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코스피도 6000 가까이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하늘길을 뚫어서 외국에 있는, 위험한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잘하셨습니다.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공군기 보내서 데리고 온 것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전쟁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어서 이만한 거지…… 여기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선거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신속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빨리 오고 빨리 통과시키고 빨리 대책 세우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제대로 잘 배치해 주고요.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배치해 주시고 그게 지방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방으로 가고 지역화폐로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드리고요.

어제 일반인들을 좀 만났는데 코스피가 괜찮아요. 그런데 30%는 괜찮은데 70%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70%가 어려운 것들을 또한, 이 전쟁 와중에 다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좀 더 나올 수 있게 그쪽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은 취약계층한테는 더……

○서영교 위원 빨리 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독하게 다가오고 더 상처가 큼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을 빨리 돌봐야 되겠다. 정부가 즉시, 국가가 될 하느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런 분들 돌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정 증시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기존 재래산업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한 공정을 통해서 효율화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올리면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라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처럼 이게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러니까 지금 ‘26인 이내’로 했는데요. 이 숫자를 원래대로 해야 되거든요. 재정부에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보면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임기가 좀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6인으로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25인으로 운영하는 이 방안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실제 운영은?

○조배숙 위원 임기가 남아 있다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좀 남아 있는 것은……

○조배숙 위원 그러면 남은 한 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위촉직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담보를 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6인 해 주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25인으로 운영…… 그 부분이 빠지면 더 충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조배숙 위원 그래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함으로써 1인이 늘어나는 것은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마 이것은 지금 환율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는데,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데 수장으로서는 실무상 애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소속 위원들의 임기도 서로 각각 다르고 하므로.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실무진에서는 26명, 상임위에서 올린 안대로 관철이 돼야 하는 것 같고. 장관님은 위원님의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추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가 홀수로 운영……

○위원장 추미애 홀수 25명으로 하시겠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배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명수에 대한 거니까.

저는 좋습니다만 그 취지가 계속 관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대조건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26인 이내’니까요 저희들이 25인 홀수로 운영하겠습니다. ‘26인 이내’로 해 놓고, ‘이내’니까요. 약속하는 걸로……

○조배숙 위원 그러면 상임위 속기록에 이걸 분명하게 기재를 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홀수로.

○조배숙 위원 그러면 장관님뿐만 아니라 후임 장관님도 마찬가지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그렇게……

○조배숙 위원 예, 그렇게.

아니, 한 번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4.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제5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2건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항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5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지원 예산이 7억으로 시작해서 거의 150억대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지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느라고 이 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님한테는 예전에 복권기금을 혁신했던 것처럼 국가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성이라는 목표에 맞게 기금 운용이 개편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PPT를 한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규모가 작지 않아요.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연간 1조 7000억 원 정도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사회적 가치 평가를 떠나서 이거는 저 중에 5000억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1조 2000억 원 정도는 아예 평가 자체를 안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장관님 결재만으로 1조 2000억 원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5000억 정도도 평가 지표 중에서 공공성 평가에 그나마…… 사회적 가치까지 전방위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ESG 평가는 2%에 불과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돼 온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관련 부처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느냐?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1조 2000억은 주로 시설 투자 이런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지자체에 주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탄소 저감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중대재해 방지라든가 또 취약계층 관련해서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자체에 돈을 쥐서 관련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탄소 저감 건물인지도 봐야 되고 중대재해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이 저기 들어가서 정부 돈을 빼먹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이 정책 효과가 나타날 텐데 아무리 국가재정에서 조금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금도 재정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면 지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 군데가 얘기가 됐지만 여기 그냥 민간의 사단법인이지 않아요.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된 곳에 수백억대 돈들이 뿌려지고 있는 곳인데 이거 한 곳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복권기금도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공공성, 사회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목표에 맞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보시고요.

지금 정부는 어쨌든지 간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총리실에서는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잘못 사용되는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협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를 좀 받으시고 이 1조 7000억 예산이 국정목표 수행에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 운용이 공익적 목표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여기 21조에 보니까 지금 대한체육회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림픽 회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운 업체나 중소기업 업체가 진입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하면 그쪽하고 미리 옛날부터 거래관계가 있거나 무슨 안면이 있거나 네트워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따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정하지가 않다.

이게 또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은 원래 경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에 해당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은 어떠세요? 이게 잘못하면 수의계약이 나중에 비리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진정도 들어오고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올림픽 회장 사용권을 일차적으로 공식 후원사로 선정할 때 그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항공이라든지 의류 같은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조치고요. 공식 후원사 선정 단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라는 한정을 지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우선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글썄요. 그런데 이게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이나 범위 이런 부분들도 다 규정을 미리 해 놔서 시장질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목표는 결국은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차로 이걸 선정할 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회장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아무한테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후원사를 선정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공정한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된 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있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이 무엇무엇무엇이 있고 이거의 규모는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사실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고등학교스포츠협의회도 있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이걸 법정 법인화하면 직원은 어느 정도 두고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시려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떤 협의회와 동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이게 다 재정 부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초중고등학교에는 이미 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나경원 위원 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초중고에는 이미 있고요. 대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실상은 지금 이미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고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학교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학교체육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나경원 위원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예산은 이미 한 15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런 법적 근거를 둬으로써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위원 우리 사실은 체육기금을 보면, 제가 들여다보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 중계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패럴림픽 부분도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장관님, 내년 8월 달에 로마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세계 청년 약 40만 명 그리고 참가자 총 100만 명 규모고 실제로 올림픽보다 더 많은 해외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해서 광화문에서 미사를 집전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그리고 세계인들이 볼 때 정말 잘 치러졌다 이런 행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그때 대한민국이 안전과 폭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청년대회도 실제로 폭염이 제일 센 8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안전과 폭염에 대한 대책을 미리 철저히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이 부분은 관련 부처들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저희가, 워낙 큰 행사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여기에 세계에서 많은 해외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비자 문제라든지 또 교통 문제, 숙박 문제 이런 걸 서울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빈틈없는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주최 측이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아마 지역적으로 가서 숙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가 있고 교황님이 오셨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동선까지도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오늘 통과될 예정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 문화행사에 관한 지원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저희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법이 없더라도 이미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이 법은 대규모 국제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법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지 이러면 그거는 헌법 위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차질 없이 그리고 세계인들이 볼 때 모범적으로 안전하게 치러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말씀, 당부 명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도 짧게……

3월 21일 날 큰 공연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BTS 공연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BTS 공연.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꼭 질문해 달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BTS 공연이 3월 21일 날 있는데 광화문이라서 얼마나 모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예상은 20만 명대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안전이라든지 편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외국에서도 많이 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많이 옵니다.

○서영교 위원 외국에서 많이 오는 건 어떻게, 체크가 좀 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입국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한국에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몰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외국 좀 체크해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BTS 공연에 간다고 그러고.

아미(ARMY)에 가입한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많던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

네시아의 대통령 최측근인 분도 아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미는 가입해야 되나요? 아미는 가입하고 돈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미는 가입을 하고 돈을 2만 5000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동욱 위원** 평소 생활이 발라야 됩니다. 평소 바른 생활을 해야 되지요.

○**서영교 위원** 끼지 마세요. 끼고 그러면 바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온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전쟁 중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그렇지만 이란대사가 험한 말들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고 엄청난 행사고 BTS가 와서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도 좋은 행사인데 대통령도 이야기하셨지만 안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격상도 했다,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앞에 말은 제가 붙이지 않겠는데 이렇게 하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면 구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부 차원을 넘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사람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것도 그렇고, 케데헌이 이번에 아카데미상 2개를 받으면서 위상이 높아져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문화부 차원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지켜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가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폐쇄하는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위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한 것도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번 행사는 특정 아티스트의 복귀 공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K-컬처 입장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피해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처럼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일 못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기사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몇 가지 119 직장신고센터에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문체위에서 아마 많이 다뤘을 것 같은 한데, 지난번 올림픽 중계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자유를 우리가 최대한 존중을 해야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개입의 실패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계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해외 중계권자에게 주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의 충분한 혜택을 못 누렸다면 그건 국고 손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좀 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 취지에 맞도록 돼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번 경우에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제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장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눈앞에 닥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지금 지상파 방송사와 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매체와 협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중재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계권 가진 특정 매체와 지상파 3사 사이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이 매체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지상파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시점의 보편적 시청권과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같은 것도 좀 구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중계권을 획득했을 때와 그 이후의 미디어 환경적인 변화가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했던 어떤 광고 수익도 달라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계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기대하는 가격 차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판매하려는 곳과 사려는 곳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차질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저도 협상 내용은 당사자끼리의 협상이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도 규모의 중계권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올 때, 특히 보편적 시청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경우에 사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일종의 계획 같은 것을 정부에 보고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보다 조금 더 강한 형태로

지금 법안도 제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사 왔다 하더라도 워낙 국가적으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지금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이 사안은 이 사안이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셔서 국민들 전체의 편익이 저해되지 않는 방법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장관님, 지금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하거든요. 광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BTS의 공연을 수용할 만한 그런 대형 공연장이 서울에서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연장보다는 BTS가 복귀하는 첫 공연을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에서 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BTS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공연을 할 만한 그런 공연장이 서울에 있나요?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장이 돼야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말씀처럼 한국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대형 공연장의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콘서트가 가능하려면 돔 경기장, 그래도 지붕이 닫히고 음향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 돔 경기장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규모는.

○**전현희 위원** 일본의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몇 석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5만 석 정도입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연장이 있어야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공연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서울에는 그런 공연장이 지금 현재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상암이 6만 5000 정도 되는데 지붕이 개방형이어서 또 잔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5만 석 규모의 돔 경기장은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하나의 기간시설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케이팝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이번에 BTS의 경우 한 26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런 관광객들을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활용을 하려면 서울에 반드시 5만 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지금 상암경기장을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거냐, 아니면 잠실경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제3의 곳에 다시 지을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현희 위원 K-이니셔티브에 걸맞은 케이팝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대형 돔 경기장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취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한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시09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범죄인 중대범죄 등을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청을 두며 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2조제1호 마목에서 중수청 수사 관할을 한정하는 ‘기술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구체적 구성요건과의 대응관계가 불명확하여 중대범죄 수사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공소청법안(대안)과의 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안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4조는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의 중대범죄수사청 배치 관련 임용 특례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관 공소청법안의 부칙과 함께 논의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우리 법안의 부칙이 수정되는 경우에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에 법외폭죄,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오늘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를 앞두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 의심 말고 믿어 달라. 검사들 태세 전환 잘하길’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마치 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대통령 의심 말고 믿어 달라. 검사들 태세 전환 잘하길’.

그런데 이 발언을 보면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 여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 더 소구하고 있느냐, 두 번째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대통령 의심 말고 믿어 달라. 검사들 태세 전환 잘하길’.

그런데 중수청·공소청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청이 지금까지 검사 조직을 통해서 헌법에 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쳐 왔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 장관님, 그게 아닙니다. 중수청·공소청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어야지요. 앞으로 중수청을 관장하시는 행안부장관님이 벌써 정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목적을 이행하는 방법이 반드시 현재의 검찰청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가, 뭐가 효율적인가 이것을 따져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엄연한 불법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정적을……

○**곽규택 위원** 지금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것은 검사에 대한 수사 보복, 정치 보복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검찰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된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정청래 당대표 또한 국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완박—검수완박—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행안부로 간 것 아닙니까.

이 행안부로 가는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인력이 올 거고 경찰화되는 조직입니

다. 그런데 경찰에 있는 조직 인력이 다시 중수청으로 가면 민생범죄, 강력범죄, 안 그래도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그 범죄들 누가 처리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장관님, 중수청법 성안, 이렇게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놔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엄청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수사개시 통보하는 것을 조금 위임해 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은정 위원 수사개시 통보하는 대상 범죄를 모든 경찰이 자기 사건 수사한다고 중수청에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되면 경찰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 법안 만드실 때 경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나목에 담합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조 2호의 ‘중대범죄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담합 범죄를 1호 나목으로 넣어 가지고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부터 128조를 지금 2조 2호 나목에 있는 것을 2조 1호 나목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중수청법 2조 1호 마목에 사이버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용어상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2호에서 규정한 ‘국가핵심기반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시설’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타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조정을 해 주시면 법사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안 내용에 관한 토론을 박은정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요. 중수청법 2조 2호 나목에 있는 것을 1호 나목으로 옮기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만 124조에서 128조까지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법상에 보면 124조와 125조에 현저하고 중대한 경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정도, 124조나 125조 정도까지를 옮겨 주시는 것은 어떨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벌금형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전부 2조 1호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128조까지 할 때는 벌금형까지 포함되는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124조 및 125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원장 추미애**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박은정 위원** 사이버범죄.

○**위원장 추미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지금 박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에 나오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정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구체적인 기술은…… 그냥 확인을 할까요?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제12호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이것 보시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배숙 위원** 장관님, 제가 보니까 수사권은 경찰 그리고 중수청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수처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수처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공수처야 특별한 조직이니까요, 일반적인 것에서.

공소청,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 막강한 권한을 넘겨줬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주어졌던 권한이지요, 제헌의회 시절에.

○**조배숙 위원** 아니, 이례적이라기에는 78년이 지났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70년 넘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걸로, 그게 정상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듣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어떤 게 정상이냐의 문제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나는 장관님하고 언쟁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제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은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잘못된 게 있지요. 그래서 저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뺏아서 중수청에게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용을 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면 중수청한테 똑같이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견제장치가 없으면 이것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떻게요?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강제수사 할 때는 영장 청구해야 되고요. 검사가 청구하는 것……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3분밖에 안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소청·중수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온 법안을 보니까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안은 그래도 수사체계를 좀 갖추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전부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 행안부장관이 특별한 사건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직접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행안부장관 또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 견제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예요.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또 부패하고 ‘이것 또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견제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검사가 발행하는 영장이 없으면 강제수사나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은 영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는 다 변호사를, 저도 변호사를 했고 주위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 경찰이 수사를 정말 명백하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검사가 수사지휘를 해서 보완을 해라, 뭘 해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지요. 항상 인간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중수청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암장 수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조로 갈 텐데……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조로 갈 텐데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나마 이 법이라도 원래 정부안에서 주장했던 것이 제대로 살려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했는데 아예 검찰은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중수청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중수청……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반적으로 지휘합니다.

○**윤상현 위원** 예,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도 가능하고 또 중수청 수사관은 일반직 경찰관같이 돼 있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재적 3분의 2가 의결하면 면직을 하고, 그래서 선거라든지 부패, 금융, 고도의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장관님이 관할하는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 또 객관성 이런 걸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정말로 헌법의 권력분립 차원에서 맞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기관은 행정부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에 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또 정부 각 부의, 소속 부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검찰 조직에서 지금같이 검찰의 잘못된 문화……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상현 위원**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공소청 검사는 영장에 대한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종결·중지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알릴,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렇게 세지는데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정말로 통제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간다. 장관님,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여러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윤상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사권이 남용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민통제고 또 인사권을 통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가장 힘센 장관님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중수청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의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완전 죽여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그런 꼴이 돼 버렸는데요.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나 피해구제나 또는 인권 보호 이런 부분이 철저히 외면된, 일종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전문성 부분은 완전히 도외시키고……

아까 문민통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위원**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저는 문민통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인민수사·인민기소가 되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한민국에는 인민이 없고 시민이 있을 뿐입니다.

○**나경원 위원** 자, 보세요. 위원 자격이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문민통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인민기소·인민수사 이렇게 되겠구나, 마음대로 징계하고 바꾸고…… 누가 그 수사를 가장 잘 압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면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인민재판입니까?

○**나경원 위원** 암장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가장 전문성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배심원 제도는 인민재판입니까?

○**나경원 위원** 지금 배심원 제도하고 이건 다르지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문성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했더니 규정을 고치기는 고쳤어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을 바꿔서 ‘임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 검사들이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예상보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발령 내십니까? 어떻게 인원 충원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강제 발령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나경원 위원 그러면 그냥 발령 내실 수 있는 겁니까,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희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그러면 희망받지 않고는 발령 내지 않겠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 희망 없이 하면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대상에 법원 공무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넣어 놓으셨는데요, 법원 공무원은 넣으면서 왜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안 넣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중수청에서 이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왜곡죄를 말씀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법왜곡죄 문제는 공수처하고의 문제고요, 법왜곡죄는 공수처하고 수사권이 충돌될 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관에 대한 범죄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법왜곡죄 말고요. 수사대상에—1조인가요—법원 공무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법원 공무원은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기관의 공무원은 다른 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2조 2호요.

그리고 법왜곡죄 부분은 공수처 부분하고 수사권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건 한번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것 검사 권한 너무 빠 봐서요 검사가 그냥 서명만 하는 검사가 되게 생겼어요. 검사가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유지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영장과 공소장에 서명만 하는 검사가 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절차에 있어서 검사가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공소청법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개를 엮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장관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에서 성장해서 검찰총장이 되더니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끝내는 그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민을 현혹시켜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더니 군인, 경찰까지 전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900조 원의 청구서를 날아들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그자의 직업이 뭐니까? 검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만 있습니까? 검사들의 온갖 나쁜 횡포……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범죄자를 잡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하지 않고—제가 체크했는데요, 다녀도 왔고요—그리고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오면 ‘이것 증거가 부족해. 증거 더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기소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 오고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잉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캐비닛에 넣어 놓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히려 폭주해서, 이를테면 또 다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경우에 대해 모두 대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놔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만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영교 위원 50명 이상에서 200명, 그러니까 공소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300명. 50명 이상 300명까지……

○서영교 위원 공소청은 200명으로 했는데, 300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공소청에 있는 검사도 심의위원회에 가야 된다, 판사도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권력이 있는 국무총리실도 가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가야 한다, 전문수사관도 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인도 가야 한다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이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 200명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200명이지요.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수사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 줄 수 있고 폭주하는 수사관은 징계할 수 있고 아니면 폭주하는 수사팀은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전문수사팀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 두시고 순간적으로 전문수사팀이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경찰은 수사팀이 잘못하면 다른 수사팀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외부인,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힘도 좀 있어서 잘못하면 징계 가는 것 그리고 교체하는 것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원래 안에는 국무총리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 아니면 청와대 등 이런 주요한 분들이 이의신청 제기, 캐비닛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폭주할 때 그때를 대비한 심의위원회를 잘 꾸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행안위원장님과 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건너갔다 다음에 하세요.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장관님, 국가권력 중의 최고의 강제 권력은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범죄자에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인데 수사권이라는 강제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가 돼야 그 수사권이 남용돼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소위 말해서 왜곡 수사, 조작 수사,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 이런 뭔가 잘못된 수사를 막아 낼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권이 수사기관에 그리고 수사관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훨씬 더 강한 권력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역시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검사의 기소권도 크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판사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사와 수사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지막지한 검사의 기소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

로잡으려고 보완수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이랄든가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 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 발부와 또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다 수사 권한이 갖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지금 형사사법제도의 한 틀인 검찰에서 완전 박탈을 해 가지고……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 있어야 될 것을 행안부장관님 밑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

○송석준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이따 끝나고 얘기하세요.

장관님 밑으로 끌고 와 가지고…… 공소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공소청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 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기존에도 공수처를 하나 만들었지요. 또 군검찰 있지요. 경찰 국수분이 있지요. 거기다 공소청을 만들어서…… 수사 권한을 다원화해서 국민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새로 만든 수사 시스템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사 권력은 강화시켜 주면서 견제 권한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 지옥으로 몰아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늘이……

○송석준 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간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송석준 위원 꺼졌어도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래서 답변을 드려도 되나……

○송석준 위원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버를 해도 너무하시네요. 마이크 끊어졌으면 답변시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좀 정중하게 제 답변 끝날 때까지 들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러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공소청…… 이것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해 가지고 가져가셨잖아요. 가져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이것 소위 말해서 ‘기소중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이따 법무부장관 오시면 따져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하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중지, 기소취소, 공소취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권력을 향하던 모든 칼을 다 거둬들이겠다, 그것을 막겠다. 지금 악법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이런

게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이 시도와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그것을 취소시키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서민들을 수사 지옥,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고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수사 지옥,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장 거두세요.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 활동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되셨으니까 이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대통령께 이 법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고, 혹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더라도 이것 재의요구 하도록 정중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재의요구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것 강행 처리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안 내용과 관계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장 수사나 부실 수사가 있을 경우에 범죄로부터 국민의 피해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방지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です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잘 못 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부담만 주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검찰청이 사망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검찰청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위원장 추미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장관님, 중수청법안 성안하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 높게 구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6대 중대범죄 중에 경제범죄는 거의 보통 특정법 위주로 구성됐었던 걸로, 3조부터 9조까지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41조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국가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까지 부정 수급에 대해서 범위가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법사위 논의에서 법안을 조정해 주셔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입법정책적 사안이니까 저희 법사위의 논의를 존중해 주실 수 있으시겠

지요,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는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삭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경태 위원님께서 법안의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2조 나목의 범죄 중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해룡 경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돌아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경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난리를 쳤는데 그냥 가만두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나름대로 또 관련한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동욱 위원** 요즘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인용을 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권력을 누구로부터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인권 보호에 있다’라는 그것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반격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사실 디테일에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국회가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오히려 장관님은 일정 부분 그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경계의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검찰은 완전한 악의 조직이다, 경찰은 또는 오늘 만드는 이 법안에 따른 조직은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지나친 확신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설립돼서 운영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선악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이 검찰에 대해서, 아까 광규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검찰을 굉장히 악마화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그래서 선한 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통제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나쁜 검찰권 행사의 기억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최악의 검찰권 남용을 우리가 목도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긴 했지만 검찰은 별로 별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통제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검찰권 남용에 관여했던 분도 윤석열 검사, 특검, 특검보 였나요……

○**신동욱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검찰권 남용은 윤석열 검사의 잘못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요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문제가 된 것은 권력이, 정권이 그걸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어떨 때는 검찰권 남용을 방조하고 지시하고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저 모양, 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체제 안에서 검사를 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무슨 범죄 조직에서 일하다 나오신 분들 같아요. 저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통제하고 또 이 부분을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민주당 정부의 검찰은 항상 정의로웠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그것은 권력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중대범죄수사청도 장관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정말 나쁜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윤호중 장관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쁜 장관 오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나는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이것은 반드시 옳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직 본회의 통과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 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좀 열린 마음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해서 견제력을 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는 기관으로 잘못 성장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검사들 보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요. 사법연수원에서도 다 평이 좋은 사람들이 검사로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의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조직인 검찰은 문제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도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마음대로 행사,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부패하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걸 비단 검찰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은 그

래서 집중하지 말고 쪼개고 상호 견제를 시킨다라는 것이 핵심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용민 위원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가장 신뢰도가 낮은 국가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헌법은 아주 막강한 입법권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회 구성원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국회는 다른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견제를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받더라도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헌법적 결단을 해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런 방식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수청에 대해서 권한 남용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역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관 간의 상호 견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청과는 다르게 검사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경력을 따져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찰에서도 올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구성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도 상호 견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공수처 중복 문제 얘기가 언급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이 경찰의 경우에—대부분 그렇지만—3급 이상입니다, 경무관급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중수청의 대략적인 어떤 규모 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 배치 규모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그 규모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습시다만……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업무 범위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부가 입안을 할 계획……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맞춰서 인원을…… 지금 행안위에서도 조금 넓어진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요.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국가 인력 재배치, 검찰청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인력 재배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 같으니 법이 통과가 되면 신속하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직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고 해괴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늘은 화가 나지가 않네요. 어쨌든 검찰개혁이 이제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검찰의 기여가 크지 않았습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수사를 은폐·축소·왜곡, 어지럽히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납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사이에 이 수사가 막강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옥죄었던 것은,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은 검찰까지도 수사권으로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사실은 경찰은 수사의 결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수사권을 발동을 하지만 거기에 검사까지도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과잉이 돼 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검사는 수사과 자기 성과를 받지 않으니 수사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보고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로만 성과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맞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러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혁진 위원**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로 견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법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검찰에 수사권이 남아 있는 것이 경찰에 대한 견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의 수

사 강화에 대해서, 수사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검찰보다는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검찰이 훨씬 강력한 권력이잖아요. 왜 동급으로 놓고, 경찰의 권력과 과거 검찰의 권력을 동일 정도 수준의 권력으로 놓고 견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훨씬 강력했지요. 전관서부터 해서 기업, 재벌들까지 다 나가서 네트워크 되어 있고 대형 로펌에 나가 있고 정치권에도 검사들이 훨씬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수사에 개입해서 어그러진 건데 이제야말로 경찰이 자기 수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경찰은 그 정도의,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안 만들면 얼마든지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혁진 위원 장관님,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도시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 경찰이 혈연·지연·학연 때문에 누구 봐주기 하고 이런 건들이 제일 많더라는 게 국민 체감도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아주 쉽다, 인사이동만 수시로 해 가지고 지역에 오래, 장기간 근속하지 않게 하면 그런 일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과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정부가 한 치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고위 간부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맞습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중에서……

마이크가 안 돼서,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를 넣어 드리세요.

○박은정 위원 지금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서 2조 2호 나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125조가 1호 나목으로 들어가고 2조 2호 나목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수청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담합 범죄를 1호로 그냥 올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나가, 범죄가 점점 늘어나서…… 이게 수사 의뢰한 것까지 전부 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점법은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둔 것은 정부 원안에 있던 것을 두었는데……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정부 원안은 2조 2호 나목이 담합 범죄가, 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범죄가 2호 나목에 들어간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125조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게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다른 법률도 다 지우는 쪽으로 할까요?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정해 주시면 저희가……

○박은정 위원 이것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범죄가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추가되는 거는 아니에요.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중수청에 고발하는 사건이나 수사 의뢰하는 사건이 전부 중대범죄로 들어가 버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애시나 존치를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한 범죄가 공정거래법 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려면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의결을 해 주셔야 넓어지는 것이지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상호 간에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합의된 안 원문을 보면 원문에 지금 박은정 위원께서 제기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다시 수정돼 오는, 행안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박은정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행위가 여기에 첨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2조 1호 나목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고 남아 있는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 조직이니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지금 이석한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직접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석하신 위원님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 고유법 안전으로 넘어갑니다.

(일부 위원 입장)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9. 공소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10.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2.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13. 공소청법안(대안)

(18시10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7건의 안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청법안(대안)은 박은정·김용민·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및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접수된 1건의 입법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소청의 조직·직무·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두도록 명시하고,

둘째,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면서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은 삭제하고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건 등에 관한 영장청구·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는 따로 법률로 규정하되 탄핵결정 외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감사의 정치적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법정 형으로 하는 정치관여죄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공무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정부안과 같이 모든 검찰청 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특별한 임용 절차 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수청 등의 공무원으로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 협의하여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토론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지.

○위원장 추미애 그냥 하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냥 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배숙 위원 그냥 하세요. 무슨 8시에 해요?

○김용민 위원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어차피?

○윤상현 위원 많이 안 걸려요.

○위원장 추미애 아, 그래요?

○김용민 위원 많이 안 걸린다고요?

○윤상현 위원 예.

○김용민 위원 다 토론하실 것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많이 걸려도 다 해야지. 밥을 2시간 동안 먹어?

○김용민 위원 직원들 식사도 고려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은 중간중간에 식사하실 수 있지만 직원들은 아예 못 나가시잖아요. 고려하셔야지요, 그런 것도.

○신동욱 위원 6시밖에 안 됐는데 하다가 배고프면 그때 정회하세요.

○곽규택 위원 30분 동안 회의 지연시켜 놓고!

○박지원 위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곽규택 위원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이 잘못된 것은 없어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5분으로 해야지요, 소관 법인데.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기우중 법원행정처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무부장관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가지고 누구하고 연락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눈길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 고위직,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차라리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지휘를 하지지 그러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님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많은데,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검찰의 고위직도…… 제가 당장이라도 제 검찰 통화기록을 받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뉴스공장에서 나온 그 말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 말씀이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매체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출연을 했더라고요.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뭘니까? 그 방송에서 나온 말이 전혀 사실무근인데 당대표는 찾아가 가지고, 뭐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대표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이시고 또 자주 나가셨던 데 아니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하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국민을 속이는 아주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모든 약을 다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의 처방전 필요한 약,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처방일 경우에는 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검사와 경찰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99%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는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 중요사건일 경우에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1% 정도 지휘를 해 왔던 거예요. 그것도 못 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해 놓고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안전장치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 그 외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독점해 가지고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또는 집권 여당이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책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놔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에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경찰이 말아야 할 민생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지금도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사건 진행 속도를.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또 인력을 떼 가지고 큰 사건 한다면 중수청에 가 가지고 있으면 민생사건 또 밀릴 것 아닙니까?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해 가지고 원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경찰은 민생범죄에 매진해라 이렇게 방향이 나갔어야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을 달리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향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없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지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지요. 그런데 그 12개 혐의를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 4895억 원—배임 액수지요—또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액수가 2000억인가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액수 뇌물액이 133억 5000만 원 또 북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이 800만 달러, 이렇게 12개 혐의인데 이것을 보면서 장관님께서서는 이게 조작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행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소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이 정부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공소취소의 유혹을 쉽게 느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래서 김어준 유튜브의 장인수 기자의 발언, 저는 장관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관님의 품성, 인격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딜을, 거래를 할 분이라고 생

각을 안 하는데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든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부 언론에, 유튜브에 어쨌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일부는 문자를 보냈다 또 전화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 그중에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다고 하면 제 전화번호 바로, 그냥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말씀드린 것에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공·사석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검사들 교육하면서도 이제 검찰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식의 강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추진위 만들고 8개 사건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이 4개 사건 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것인데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재판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적 추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추라기보다도 과거 검찰권의 남용 또는 오용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결국은 장관님께서 공소취소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공소취소 거래설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사실무근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아니면 정치적 압박 시도 이런 것은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줄 수 없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분들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공소청 검사지요—영장청구권이나 집행·지휘권도 없어졌고 수사지휘권도 없어졌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어졌고 오히려 중수청에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도 없어졌고 중수청은 완전히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선거·부패·금융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만약에 중수청이 한다면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장관님의 양심을 걸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사법체계를 위한 진짜 법안이나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제도가 우선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장관님,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쿠광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검찰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탄압하고 조작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군부독재 정권 시절 국민들의 피땀으로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재 권력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공 조작에 부역하고 야당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 주범들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1980년 광주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애완견으로 전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과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내 보십시오.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 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일선 검찰에서도 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사경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지휘라기보다도 실제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또는 협력의 형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게 어떨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그것도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궁을 하겠습니다. 마는 실제 현장에 가 보면 특사경이 있는 많은 기관의 장들도 검찰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같은 것을 수사하는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검사들이 가 갖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쨌든 공정위의 자본시장 조작 범죄들 그건…… 그다음에 담합 같은 경우는 전속고발권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협력하는 관계, 이런 틀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도 그렇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지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배숙 위원 중지됐지요. 그런데 공소취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는 지난번에 언론인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제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일은 없다. 어차피 공소취소는, 물론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중수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지휘한다고 해서 일선 검사들이 이거 들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이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요.

○조배숙 위원 공소취소는 공소청의 권한이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런데……

○조배숙 위원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산하에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런데 공소청법에 보면 장관이 이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

○박은정 위원 아니, 조작기소 했으면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조배숙 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소취소……

○조배숙 위원 물론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저희들이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그런데 자꾸 어느 방송에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보니까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장관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검찰이 보고 좀 부족하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얘기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 오라고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갖다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거를 청구할 건지, 기각할 건지 이렇게 되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 영장이 부실하

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지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건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그게 공소청법의 어느 조항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걸 할 수 없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절대로 절대로 이런 보완수사요구권을..... 보완수사 요구권도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영장에 대해서 보완 여부야 지금 저희들이..... 이게 조직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형사소송법 논의하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영장 청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검찰이 어떻게 이 부분을..... 옛날 같으면 이건 전혀 문제도 안 되지요. 보완수사 요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느니 마느니 그것 가지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현재 공소청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느니 마느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건요구권도 안 주고 의견제기권도 안 주고 또 입건통보의무도 없애 버리고 그래서 중수청에 너무나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안 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을 왜 지금 폐지하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그래서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본회의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장관님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요청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 장관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잘못되면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국회 입법을.....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정말 나중에 후회할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장관님,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권 취하해라’ 이런 문자를 검찰 고위 간부자에게 보낼 사람 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자기들이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이 공소권 취하 요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한 것을 그걸 못 한다고, 왜 말 한마디 못 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장관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공소권 취하를 해 달라고 법무부장관한테 요구한 사람이 계시잖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하던 버릇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 건 참 잘못이에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뭐 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저도 황당하고 참담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장 모 기자가, 전 기자가—현재도 기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자기가 듣고 이러더라 하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간부가 되치고 있다고, 이걸 한번 조사해 보자라고 했는데 제 소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유튜브에 나와 갖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 견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단편적인 얘기를 갖고 잘못된 프레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유튜브도요 과거의 유튜브와 지금 현재의 유튜브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뉴스공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이에요. 제가 김어준 공장장하고 ‘나꼼수’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연한 사람입니다. 물론 김어준 공장장이 비꼬아서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하는 사람의 책임하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자기들 하던 버릇을 ‘지금도 하겠지’ 이런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개헌 문제는 지금 장관님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준비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제처도 있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법무실에서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 개헌은 사실 여야당에서 함께 주장했던 겁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의 공포를 강화시키자, 지방분권 하자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부마항쟁도 함께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기록을 찾아서 부마항쟁의 희생자 700명을 명예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정부에서 보상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다르더라고요.

이번 개헌이 지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룩하는데 이번 1차 개헌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도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개헌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헌법이 아시는 것처럼 8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사회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때문에 일단 여야가 합의된 부분들 또 국민적 공감대 또 국민 통합에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개헌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장관님도 알다시피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 문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뭐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지금 중수청·공소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당과 법사위와 알력이 있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의 중이고 공론화 중이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초가삼간에 불 지르지 않고 과유불급하지 않는다.

이번에 합의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집권당과 논의가 있었어요. 또 최초 정부안 관련해서도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주장들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찰개혁단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에 당에서 그러한 얘기도 안 하면 당장 국민은, 언론은 민주당이 청와대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잘됐는데, 물론 장관님 으로서는 검찰을 없애고 중수청으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직을 걸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하셔야 돼요.

이번에 말이지요 마치 공소권 취하를 꼭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도하 언론이 얘기했을 때 저도 화나더라고요, 왜 이 양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다음 날 기사에 ‘참담하다, 아니다’ 하지마는.....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에요. 잘 알아 두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 왜 또 갑자기 국민의힘을 끼워 넣으세요?

○박지원 위원 뭐요?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국민의힘이에요?

○박지원 위원 국민의힘입니다. 몰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야 돼?

○신동욱 위원 뭘 국민의힘이에요, 그게. 말씀 가려서 하세요.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한테 청탁하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그게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한테 청탁하신 분이 저기 계시는데……

○박지원 위원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공소취소 해 달라고 했다고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은정 위원 장관이 자백을 했는데, 무슨.

○나경원 위원 의견 표명이예요, 의견 표명. 정치적 사건을 왜 기소하느냐 하는 의견 표명이예요.

○박지원 위원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잘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장관님, 부끄러우시지요, 당황스러우시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뭐……

○나경원 위원 장관님은 검찰을 해체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 해체가 아니고요.

○나경원 위원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장관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드는 그런 장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싶으면 죽 하세요.

장관께서 예상한 것보다도 더 최악, 정말 개악 중의 개악인 그리고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의총에서 이미 정부 여당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더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검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민의 인권은 이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공소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도하 언론도 다 분석하지만 이건 정청래 대표의 승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승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요 얻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경파의 그 의견대로 완전히 검찰을 박살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뭘 얻었느냐? 지금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한답니다. 내일 국회의장이 이것을 강행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니까? 공소취소로 가는 빌드업이지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은 또 뭘 얻었느냐? 개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셋이서 거래가 다 끝났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공소취소 얻고자 완전히 강경파에 굴복한 것이 이번 공소청법안이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왜 김어준은 고발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정인을 갖다가 이름을 특정해서 거명한 것도 아니고……

○나경원 위원 아니지요, 김어준 씨가 이렇게 변명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패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지 몰랐다’ 했지만 예고편에 예고 기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고발할 요건에 해당하는데 왜 안 합니까? 사실입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나경원 위원 그러면 고발하세요. 김어준 씨 고발 요건에 해당하니까 고발하세요. 그래야 국민들 의혹이 없어집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기 때문에 조사하면 저희도 적절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고발하지 않고 뭉개시면 ‘아, 공소취소 거래가 사실이구나’ 하고 국민들이 믿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김어준 씨를 고발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위원 안 그러면 정청래 대표랑 김어준 씨가 짜고 이런 것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내용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해야 될 국정조사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소취소 거래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영에서도, 이것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아예 근거가 없는……

○나경원 위원 아니, 근거도 없는데 왜 김어준 씨를 고발하지 못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일말의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러 그것을 대응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이 건을 보면요 정말 참, 검사를 다…… 검사의 수사 지휘, 영장집행 지휘…… 이제 검사는 영장 서명하고 공소장만 서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복도 이런 보복을 해 가지고 결국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와 균형도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영장을……

○나경원 위원 영장집행 지휘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보완수사권 안 주시겠습니까, 정성호 장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추후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틀을 짜면 처음부터 예정하고 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는 평소 소신은 보완수사권 줘야 된다는 소신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완전 강경파에 끌려가서, 지금 강경파에 끌려간 게 결과가 뭐냐? 국민들이 어떤 권리구제도 제대로 못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결국 대통령 공소취소 하기 위해서 국민 피눈물 나는 법 만드는구나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 조직도 하여간에 웃기게 만들었는데요. 특사경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쳐 보시라는 말씀 간곡하게 드리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나간 법안이지만 중수청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을 물어 왔나요, 거기 보니까 법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던데?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저희가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법원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법원행정처 의견도 조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논의해 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이것을 말할 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공소취소 거래설,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 하면 바쁜 사람들이 그때의 원 텍스트를 보지 않고 ‘무슨 거래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도 하고 그러던데 무슨 거래가 있었던 모양이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이 있지도 않은 것을 호도해서 프레임을 잡고 마치 있는 것인 양 하는 것은 그것은 구태 정치라고도 얘기 못 하는 굉장히 사악한 거지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도 황당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표 위원** 진짜 황당하고 이게 너무.....

봅시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짚어..... 사악한 겁니다, 이것은.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딱 단단하게 만들어진 프레임을 여기저기 전파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위원** 김어준 언론에서 만든.....

○**김기표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프레임을 씌워서 저렇게 공격을 하면 원래 텍스트, 원래 말·글을 봐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장 기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로부터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자기가 들었고 고위 관계자가 ‘공소취소 해 줘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이게 장인수 기자가 한 말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일단 이 말은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장인수 기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 검찰 고위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한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검찰 고위 간부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검찰청법 개혁이 되고 있는 그 대상인 검찰 간부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고 그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사실 확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마치 그중의 한 명이라고, 고위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마치 거래를 제안했다는 듯이 프레임을 설정해서 돌아다니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뭐니까? 원 말이 뭐예요, 장 기자가 한 말이? 검찰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사 백번을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조건 기정사실화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검찰청법 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야,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검찰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 자기들 수사 걸린 것, 기소 걸린 것 좀 봐 달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래설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설이라고 유포하면 안 되지요. 지금 사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데……

다음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어준발 ‘이 공소취소-검 수사권 거래 의혹’에 야, ‘특검해야’ 충공세”, 지금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 진영서 나온 ‘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 거래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있어요.

“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 요구. 여, 허위라면 즉각 고소하라’” 이게 지금 완전히 그걸 기정사실……

도대체 정치권에서 주장을 할 때 원래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고 진짜 그 근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안 하고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했다고 하면 정말 사악한 거지요, 하고서도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요. 공소취소는 당연히 거래 대상이 아니지요. 왜 거래의 대상이 아니냐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누군가를 타깃으로 삼아서 인간 사냥

을 한 그 결과가 기소라면 저는 거래가 아니고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서는 공소취소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 그거 일단 수사하고 트럭으로 쌓아 가지고 증거 해 가지고 기소하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패가망신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권력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면 ‘조작해서 그렇게 수사했어도 범원 가서 무죄받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요새는 수사기록, 증거기록도 많아요. 진짜 트럭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특수부, 인지수사 하는 부서에서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제가 변호사로서도 했지만 기록 검토를 한 달 내에 다 하지도 못 해, 그 일만 해도. 그렇게 던져 놓고, 조작기소 던져 놔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 있으면 알아서 혼자 하고 돈으로 능력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몇 명이든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그거를 무죄받아 봐’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해서 조작기소 한 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항소하고 해서 3심까지 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3심까지 가서 무죄받아’,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돈 풀어 가지고, 아니면 내가 실력 있으면 해 보든지’ 이런 태도가 가능합니까?

장관님은 공소취소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확인해 가지고 이게 기소가 잘못된 것이다, 검찰이 애초에 조작한 것이고 인간 사냥의 취지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기관이 공소취소를 해야지요.

○조배숙 위원 이제 본심이 나오네요.

○김기표 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김기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해 갖고 기소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해 갖고서 장관이 지금 직접적인 공소취소를 할……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도 없고, 그런 취지입니다.

○김기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면.

.....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원행정처장직무대행님, 나경원 의원실에 ‘공소청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런 거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아 봤어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공소청법이요?

○최혁진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중수청법이 아니고?

○**최혁진 위원** ‘공소청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법원행정처’,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최혁진 위원** 내용에 ‘지나치게 불명확, 형식적 명확성 결여’ 이런 표현까지 넣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명확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파기환송은 왜 그렇게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저희가……

○**최혁진 위원** 이렇게 형식과 명확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파기환송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저희가 명확성에 관한 의견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청법이 해당 부분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똑같은 대법원이 맞나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내란·계엄의 밤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시던 분들이 지난번에 사법개혁 3법에 이어서 검찰개혁 법안에도 재 뿌리기, 고춧가루 뿌리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대법원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대법원 맞아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도 자리에 없어서 직무대행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최혁진 위원**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보고하고 검토받고 보낸 의견입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혁진 위원** 직무대행님 개인이 보낸 겁니까, 정리해서?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행정처 자체에서 절차에 따라서 보내 드린 겁니다.

○**최혁진 위원** 법조계에서 요즘에 그런 말이 돈대요, 하도 법원행정처가 나경원 의원실 요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계셔 가지고 ‘혹시 남편 김재호 판사가 법원행정처장후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돈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금시초문입니다.

○**최혁진 위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혹세무민한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정작 말을 해야 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는 지금 무슨 생각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생각입니까? 입법권 침해예요. ‘헌법 위헌 소지’, 건건이 그런 얘기 하셨지요. ‘위헌’도 아니고 ‘위헌 소지’, ‘위헌 소지가 있다’.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셨습니까? 그건 위헌 소지가 아닙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일입니까? 지금 검찰개혁 법안 가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이야기드립니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국민적 공분·분노·불신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오셔 가지고 건건이 따박따박 반대 입장, 엄한 공소취소 이런 얘기 하고 앉아 계신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본회의의 결 방해하시고 필리버스터까지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철회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법사위 같이하시니까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길에 대해서—마지막 방법입니다—제 말 똑바로 들으시고 이행 여부 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서명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 국민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최혁진 위원** 여기 서명하세요. 제가 나눠 드릴게요. 이거 서명하시면 그나마 국민을 위한 사법부 만들어 가는 위원들이라고……

○**조배숙 위원** 우리는 헌법기관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 국회를 회화화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제 얘기 방해하지 마세요.

인정할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말을 걸었잖아, 먼저.

○**최혁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국회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똑바로 하시기 바라고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님, 직무대행답게 일하십시오. 희한한 소리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전체적인 맥락을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혁진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내란의 밤에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소청법·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되는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광장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졌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종언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단호한 개혁을 우리 국민들께서 명령하셨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과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과거 검찰이 수사에서부터 기소 또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갖다가 독점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인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컸고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정부 때 검찰권의 오용·남용이 매우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또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검찰개혁은 사실상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검찰이 해 왔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청 해체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동안 해 왔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더구나 국민들 앞에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물론 잘못은 없으시지만 검찰이 과거에 해 왔던 이 모든 과오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을 대표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장관 취임한 이후에 과거 검찰권의 오용·남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일단 관행적인 국가 폭력에 관련된 사건들이나 관행적인 항소도 저희들이 중단시켰고요. 그다음에 재심 사건들 또 최근에는 과거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기소유예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권의 오용·남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고검에서 인권침해 TF를 운영 중인데 가동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확대해 갖고 과거 권한의 오용·남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제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도 말씀하셔 갖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역사적인 날이라 그에 검찰의 입장으로, 검찰을 대표하는 법무부장관 입장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의 검찰권 남용 그리고 조작기소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형사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또 법무부에서 따로 그런 진상조사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상설특검도 해서 그러한 잘못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 하여튼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좀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TF를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상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체 내 인권 TF를 하든지 아니면 상설특검을 하든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작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공소취소나 이런 거는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공소취소 이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대통령을 특정해서 공소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진상조사를 거쳐서 잘못되고 그리고 범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소취소나 이런 절차가 뒤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수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 발언……

○위원장 추미애 예,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어차피 안 주실 거니까 위원장님께 정말 한마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기관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국회 질의시간에 특정 의원의 방에 뭐가 갔는데 그게 남편이 뭐니까 어떤……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저희가 법사위에서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경고 먼저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면 기관이 어느 방에 자료를 냅니까?

위원장님, 한말씀 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박지원 위원 시간 가니까 발언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 시간 제가 씁니다. 위원님, 가만 계시고요.

○박지원 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신동욱 위원 앞으로 저희가 어느 방에 무슨 자료가 갔다는 것을 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국회의원은 자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내요, 법사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아니요, 들으셨잖아요. 나경원 의원 방으로 갔는데 이게 남편을 무슨 법원행정처장 내정설 어찌고 하면서, 그 수준 낮은 가설을 저희가 듣고 있어야겠냐고요, 우리 법사위원들이.

○최혁진 위원 수준이라니요, 언론보도 보고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인데 뭘 얘기를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수준 낮아, 진짜.  
 ○최혁진 위원 대법원이 왜 이런 자료를 냅니까?  
 ○곽규택 위원 수준 낮아.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경원 위원 그것 수석실로 온 거를 우리도 같이 받은 거예요.  
 ○신동욱 위원 참 기가 막혀서…… 그만하지요.  
 ○서영교 위원 나도 좀 줘 봐요.  
 ○신동욱 위원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우리는 안 봤어요.  
 ○서영교 위원 그것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질의합니다.

장관님, 지금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장관님 참 안타까운 것이 나중에 결국은 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에 관한 법안들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공소취소로 간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사위가 해 온 것들이 ‘아, 결국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단언컨대 국민들이 느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 말이 과연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언론계에 오래 있었고요 20년 가까이 인터뷰했던 사람입니다. 김어준 씨 얘기가, 장인수 기자가 나와서 ‘당신 뭐 취재한 것 있는데 한번 마음껏 얘기 해 보세요’…… 맥락을 보면요 전혀 그런 것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장관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공소취소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 물밑에서는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연찮게 그 방송으로 튀어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프레임을 씌웁니까? 장인수 기자가 저희 당과 가까운 기자입니까, 김어준 씨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도 무슨 공소취소가 가 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분명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시기는 했지만 계속 그걸 지금 쟁점화시키잖아요.

장관님, 항소 포기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민주당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법사위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왜곡죄 처음 얘기 나왔을 때요 ‘저게 무슨 황당한 얘기지?’, 그런데 결국 해내시잖아요. 대법관 증원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아니,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를 다 하지?’, 해내시잖아요. 4심제, 대한민국에 4심제 있을 수 있나? 재판소원, 그 황당한 것 다 해내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법안 보십시오. 처음 민주당이 얘기한 것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

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장관님은 뭔가 좀 해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완전히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님 발언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본인들이 내부에서 권력 투쟁하느라고 나온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 하는데 무슨 저희 당을 뒤집어씌워요, 공소취소를? 저희 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내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통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해서 공소취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거래설에 대해서는 파르르 떠시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조작기소’, ‘조작기소’ 그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작기소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디테일한 것 따질 것 없고요. 오늘 이 법안,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소취소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마지막으로 절대로 그런 것들…… 국민들 진짜……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요, 철회 맞는다고. 저는 공소취소라는 것이 현실로 되는 날 이재명 정부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상식적으로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호소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무근이고요. 저 역시 장관으로 일하면서…… 위원님들,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관이 나서서 다수의 검사들에게 공소취소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그게 비밀이 유지 되겠습니까?

저도 다만 이 과정에서, 물론 저희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밝혔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지 않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이성운 위원님.

○**이성운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운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안 성안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검찰 사망의 날’, ‘사망의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관님, 검찰이 언제 죽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순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성운 위원** 누가 죽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전 정부의 전 과정을 통해 갖고 일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성운 위원**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검찰을 죽였습니다. 걸핏하면 야당 대

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 대고 또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수사권·기소권으로 겁주고 이런 윤석열 정치검찰, 반면에 김건희·윤석열 내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윤석열 검찰은 죽었다’, ‘검찰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선언이 정말 많았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 만족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른 것보다도 긴밀한 숙의와 또 협의 과정을 통해 갖고 성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실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지휘는 폐지하더라도 협력·감독 정도는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과 조직 사이에 명칭의 혼동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리 그냥 대공소청으로 두는 게, 내용의 실질에 변화는 없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나……

○**이성윤 위원** 대공소청의 ‘대’ 자를 떼라는 말은 국민들의 요구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뭐 그런데요.

그다음에 37조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뺐지만 지청장은 또 논리상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했는데 그 부분은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아시겠지만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여기에 따라서 공소청을 만들었고 또 국민들이 정부안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검찰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권을 장악하면서 군림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회적인 방법 이걸 통해서 내란을 꿈꿨던 윤석열이,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시고요.

또 올해 1월 달에 서울고검에 신천지·통일교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장관님 보고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구체적인 사건 보고를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합수 본부장 중심으로 해 갖고 매우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엄정하게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께서 왜 성과가 지금까지 안 나오느냐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경찰과 그리고 검찰 한 70명 정도가 수사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두 달이 넘도록 성과가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여러 번 요구했고 여기에 박영재 전 행정처장님께도 이렇게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많은 국민들이, 52% 정도에 달하는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 불신이 7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적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노태약 대법관 후임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중앙선관위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대법관 후임을……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아, 대법관 제청…… 예.

○**이성윤 위원** 1월 달에 이미 추천이 됐는데 두 달이 되도록 왜 제청을 않고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만 대답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가서서 대법원장님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장 대법관 후임 제청하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대체토론 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서영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인이라고 있었어요. 아기는 입양당했고요. 그런데 입양모가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치사였는데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거든요.

(영상자료 상영)

해든이 사건입니다. 아기가 4개월이에요. 저 아기가 숨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으로는 이렇게 아기 엄마가 아기를 밟는 장면이에요. 아기를 밟는 장면이고요. 4개월 된 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물세 군데가 부러졌고요 그리고 여기 복부가 다 터졌다고 합니다. 아기가 죽었는데요. 집에 홈캠이 있었고요. 이 홈캠이 발견돼서 저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치사였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아동학대살해로 했습니다.

지금 9만여 명의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저거는 청원입니다.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월 26일 날 검사들이 구형을 합니다. 9만여 명이 서명을 구글폼으로 했고요. 저것은 청원입니다. 17살의 청년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7만 5000여 명이 청원을 했는데, 전자청원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자기 모든 걸 다 넣어야 청원이 되거든요, 제가 구하라법 때 했던 건데. 저 청원 들어왔는데, 3월 26일 날 구형 있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대행님, 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제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법안을 계속 만드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전달해 주시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 또 기자회견을 위원님들과 하려고 하는데요. 꼭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이게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가 구형에 대한 직접 조치는 어렵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들……

○서영교 위원 지휘해 주실 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황 관련해 가지고 공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중요한 것은 저 아빠가 방조 정도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대요. 변호사가 8명이랍니다. 저 아이가 죽은 날 아빠는 성매매를 했다고 하고요.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러고 변호사 8명을 놓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보세요, 애를 발로 밟는 것. 여기가 다 터졌답니다. 이제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간절히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간절히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이 사람 누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박상용 검사.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한동훈, 아주 유명한 검사들이에요.

이창수·조상원·최재훈·박성재·심우정·박상용, 아주 유명한 검사들이예요. 이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정점 찍은 사람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를 저희가 문제 제기했더니 저희들을…… 고개를 아주 더 뺏뺏이 쳐들어요. 이게 그때 고개 뺏뺏이 쳐들고, 무섭더라고요. 그랬던 건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조사 다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조사 다 했는데 박상용…… 밑에 있는 직원들이 수행비서처럼 1313호 드나들었다. 거기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문이 아니라 현관문 들어갈 때 종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것 착착 열리고 들어가더라.

그리고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녹취에? ‘돈이 있어야, 내가 이재명한테 줘야 돈을 줬다고 하지. 이재명한테 돈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어’라고 하는 녹취가, 면회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녹취, 다 나왔잖아요. 이라고도 조작이 아닙니까? 이라고도 조작이 아닙니까? 박상용이 이라고도 조작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후보 될 사람 조작했어요. 조희대, 5월 1일 날 파기환송 시키면서 온갖 불법 다 저질렀어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줬는데 그게 무서워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어요.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요?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아주 현격히 공여한 자들 아닙니까, 이자들? 이라고도 검사는 기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지 않지요? 그리고 왜 이게 인민재판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 대는 거지요?

○**나경원 위원** 헛소리라니요?

○**서영교 위원** 인민수사, 이게 뭐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곽규택 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그 행동이 인민수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 돈 받은 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성운 위원이 윤석열에게 그렇게 당한 거예요.

○**박은정 위원** 검사 편을 왜 드세요? 왜 검찰 편을 드시냐고?

○**곽규택 위원**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저러니까 인민수사라는 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져 가지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윤석열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아니, 너무 논리의 비약이 심해.

○**서영교 위원** 이런 일을 저지른 검사를 보면서……

○**곽규택 위원** 무슨 앞뒤가 맞아야 이야기를 듣고 있지.

○**서영교 위원** 여러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검사는 기소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 확실히 끊어 내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김성훈 구속시키는 데,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검찰이 세 번을 기각했어요. 그렇지요?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이번에 공소청법에서도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정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에 자신 있게 힘차게, 검사는 기소하면서 자부심 갖고 정의롭게, 경찰과 수사관은 수사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제도가 잘 안착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가셔서 대법관 임명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정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 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제도가 잘 안착돼 가지고 기대한 바대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특히 아마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넘어가서 겹치는 구성원들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검찰은 이제 진짜 없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각오를 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통하시고 문화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제가 거의 매일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안들이 정말 안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서 검찰이,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제도를 설계했고 오늘 그 설계된 제도를 입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여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 제도여도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 남용되고 악용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관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하기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부칙 7조인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조 1항과 2항을 합쳐서 하나의 조항으로 7조 1항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청으로 가는 것과 또 본인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절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 합의는 했지만 문구를 저희가 당시에 정확히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지금 만든 문구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 봤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의 다른 기관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우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검찰수사관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장관님, 그 부분은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 때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시고 정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적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예,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일단 소위에서 이러한 취지로 합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위원 안 계셨잖아요, 합의할 때.

○나경원 위원 아니지요. 이 7조……

○박은정 위원 그냥 가 버리셨잖아요.

○나경원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신동욱 위원 들어 보세요, 그냥. 인내심이 없어.

○나경원 위원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박은정 위원 회의도 안 하셨잖아요, 회의도.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좀. 의견을 내잖아요, 없었으니까.

○나경원 위원 의견을 얘기하는데 좀 들어 보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의 희망,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그런 취지로 박근혜 위원님께서 수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합의한 건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령이 지금 불확정적인 개념이고요. 결국은 검사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수사관으로 발령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냥 하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법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 ‘검사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인가, 아까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경우에는 원하면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여지를 자연스럽게 열어 놔기 때문에 구태여 ‘다만’ 이하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하의 조항은 찬성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만’ 이하의 조항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검사는 앞단에서, 본문에서 이미 제외되니까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곽규택 위원 어떻게 제외가 됩니까? 잘 읽어 보세요. 위에 ‘검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나오잖아요.

○나경원 위원 제외 안 됩니다.

○곽규택 위원 ‘다만’ 이하에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사하고 소속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위원장 추미애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 검사는 제외됐는데……

○곽규택 위원 명확하게 하려면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주어를 딱 못 박아 줘야지요.

○나경원 위원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검사도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게 맡기시면 돼요.

○**나경원 위원** 아니, ‘다만’ 넣으면 안 된다니까.

○**김용민 위원** ‘다만’이 들어가야 근거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 중수청법에 벌써 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경우는 중수청법에 따라서 발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이것은 인사혁신처랑 저희가 상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 정 그런 취지라면 여기다가 ‘다만’ 다음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안 해 줘요? 명확하게 해야지.

○**나경원 위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만으로 한정하든지, 아니면……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무원을 또 구별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요.

○**나경원 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조배숙 위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만’ 이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수청법에서 그 규정을 해 놔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는 중수청법에 따라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 만들면 이것 때문에 위헌 돼요. 나는 진짜 이걸…… 그렇게 하시든지.

○**박균택 위원** 한말씀드려도 됩니까?

○**신동욱 위원**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나경원 위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재판소라도 이걸 위헌 내.

○**신동욱 위원** 다른 직역으로 함부로 보내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일반 기업은.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이 규정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부처에나 배분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들이,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전직을 돕겠다는 선의로 이 규정을 뒀을 것이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취지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물론 이게 어떤 직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직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면직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부처의, 예를 들어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재편이 있거나 직제가 개편이 되거나 과거에 경제부처들 통폐합이 있었을 때 그때에도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 소속으로 보거나 어느 정원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런 기능을 조정했던 또 정원을 조정했던 그런 규정들이,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희망이라든가 특기를 반영하는 그런 기회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선의로만 되겠습니까, 다른 국가기관도 있어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어쨌든……

○**박균택 위원** 장관님,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검사들이 우려하는 바도 사실입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희망에 의해서 갈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욱 위원**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것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요. 대통령령이 선의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 해석하시지만 본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부처 공무원들 전직하는 거랑은 다르지요. 검사는 특정직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같게 만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거 놔두면 아마 검찰이 이프로스인가 거기에 더 많이 쓸 거예요.

○**박균택 위원** 제가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동욱 위원** 선의라면 괜찮은데 이게 선의 아니게 활용될 경우에……

○**박균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장관님 말씀을 좀 더 듣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왜냐하면 너무 열려 있다는 거지요. 어제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경우’ 이런 걸 넣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못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열어 놓는 것은 조직을 굉장히 불안하게 해요.

○**조배숙 위원** 당사자는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나경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분명히 특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 부처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다만’ 이하에도 똑같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한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지요, ‘대통령령’ 앞에.

○**조배숙 위원** 그런데 검사만 제외하고 하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균택 위원** 장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셔야 돼요.

○**조배숙 위원** 아니, 검사만 제외하는 걸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균택 위원** 이런 부분은 장관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장관님, 혹시 법무부에서 마련한 안 같은 게 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이미 다 말씀은 드렸는데요, 임용되길 희망하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정리된 조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진한 글씨로 보시면 ‘중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렇게 하면 밑에도 검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

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앞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해서 주어를 넣는 것이지요. 한정하는, 주어라기보다 대상어를 넣는 것이지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지금 검찰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있고 전체 동요를 막는 데는 오히려 저희 의견대로 전체 검찰 공무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직할 수 있게 하면 저는 일반 수사관도 자의적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전체 검찰 조직의 안정에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배숙 위원**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청벌에도 여전히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지위보장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부칙에도 마찬가지로 그 신분보장을 흔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이 조직이 폐지되는 만큼 정부에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여기다 둔다는 것인데 그 근거 조항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보장이 되는 별정직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부칙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까지 포함되게 해석될 여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 해석을 안 시키려고…… 아까 앞에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해서 검사를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밑에 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본인의 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걸 좀 넣어 주시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이게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다만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옮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면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나중에 결정하시면 돼요. 이건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규정을 넣는 것을……

○**곽규택 위원** 장관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김용민 위원** 오래가실 거예요, 오래 하실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근거규정을 왜 못 넣게 하느냐고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지. 게다가 이게 다 합의한 안인데.

○**박은정 위원** 이게 없으면 더더욱 근거가 없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기관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 김용민 위원** 이게 인사혁신처도 다 동의하고 같이 합의한 안이에요.
- 신동욱 위원** 분류해 가지고 이상한 데 보내고 막 그런다고.
- 박은정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 김용민 위원**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 이성윤 위원** 언제부터 검찰을 걱정했어요?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성윤 위원님이 걱정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 이성윤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냐고요?
- 신동욱 위원** 이성윤 위원님이 후배 걱정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 박균택 위원** 장관님 의견을 좀, 조직법에 관한 것이니까 행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희망에 따라’라는 말을 하나 넣어 주면……
-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대통령령’ 앞에 뭘 넣지 말자?
- 박균택 위원** ‘다만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이걸 그렇게 막 정리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인사혁신처랑 조율을 마쳐 온 내용인데.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원안대로? 이 조율된 원안대로?
- 김용민 위원** 예, 인사혁신처랑 조율한 건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추미애** ‘검사’는 빼고, 아까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가면 해석상도 문제가 없고,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하는 거지 국회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자율권과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 나경원 위원** 수사관들도 반발할 거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도 희망 그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 조배숙 위원** 장관님은 그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 조직의 동요가 있을까 봐.
- 나경원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검찰 조직이 전체적으로 술렁술렁하니까……
- 위원장 추미애** 중수청으로 신설되고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관계로 수사 인력이 남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배치를 잘할 수 있게끔 정부에 재량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검찰 직원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등’ 해 갖고 중대범죄수사청 외에 또 다른 기관으로 배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정부가 결정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 김용민 위원** 그 고려를 장관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장관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하실 건데……
-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 최혁진 위원** 재량권을 드리는 거니까.
-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대통령령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법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의견도 그렇고.

○**곽규택 위원** 아이고, 우리가 여당입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뭘 걱정을 해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시고 책임지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왜 가요? 끝까지 있어요.

○**신동욱 위원** 표결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토론은 왜 하세요?

○**신동욱 위원** 잘못된 법에 대한 토론은 하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박지원 위원** 장관님, 나경원 위원이 자기 공소취하 해 달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요구한 거 몰라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고 있지요? 나는 모르는가 해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임위 위원님에 관련된 사항인데 장관이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위원장 추미애** 부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그러니까 검찰총장, 감찰관 등이겠지요—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헛갈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제7조 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것은 향후에 수사권 축소, 수사권 폐지로 인한 현재의 인력, 검찰청 소속 수사공무원의 인력을 적정한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측의 재량 사항을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본인의 희망을 우선 중요시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아마 정부에서 현명하게 인력 재조정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장관님.

저는 검사에 대해서 제외한 것은 찬성하고요. 그런데 일반 검찰직 공무원도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법에 ‘희망에 따라’라는 것을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지만 법에서 그 정도는 해 줘야 그동안 검찰청에서 일했던 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박군택 위원** 만약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한다면, 희망하는 경우를 전제로 단다고 한다면 검사들도 포함시켜도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따로 규정할 필요 없고 같이해서 ‘희망에 따라’ 정도를 넣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냥 원안대로 가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이 대통령령 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직무 내용의 유사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직급도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 특정직이었던 만큼 그 성격이 존중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조직의 폐지에 해당되는 거여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면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정하게 직무 내용 유사성이나 직급의 대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해 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그 기준에 포함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희망에 따라’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에 쓸 수 없는 표현, 담을 수 없는 표현인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일반 수사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옮기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등’으로 했을 때 신분이 더 불안정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위원장 추미애** 앞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상당 직급과 직무 내용의 유사성에 대해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오히려 경찰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지적과 이런 걸 받아들여서 ‘다만’ 앞에 다시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중수청법 규정과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중수청법에도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공소청법 부칙 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무엇무엇에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해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정에 대응해서도요, 여기도 ‘희망하는 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조직의 안정과 연속성에 도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앞에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건 똑 같고요—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로만 하겠습니다. ‘이하에서 같다’는 빼고요—(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한 직급으로  
,.....

○**김기표 위원** ‘존중하여’.

○**위원장 추미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희망’보다는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  
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성윤 위원** 그것만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존중 등 제반 사정을’ 해야 할 것 같  
은데요.

○**위원장 추미애** 그것은 대통령령에 다 들어가지요. 제반 사정까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  
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열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고 공소청은 분할 조직인데 신설 조직은  
당연히 ‘희망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할 조직일 경우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안 됩니다. 공소청을 사실상 검찰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

○**이성윤 위원** 만일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할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서 그랬다면 모를까 지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의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인  
데 본인들의 희망이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 추미애**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뭐.....

○**김기표 위원** 아니, 그것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잘할 일이지.

○**위원장 추미애** 보통은 우리가 지원서 써 내잖아요. 1순위·2순위·3순위 써 내잖아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제외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법무부에서 앞으로 잘해야 될 일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존중’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 건너편 44조 2항에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이 나쁘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8조부터 제53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 등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공소청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법률을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공소청 또 공소관 소속 검사님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잘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폐지되는 검찰청은 인권옹호 기관이라기보다는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작기소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내지도 못했고 끝내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 내란범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취소 되고 나면 당연히 석방지휘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서 내란범이 파탄시킨 사법정의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은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끝내 내란범을 옹호하고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가 오히려 거리를 확보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몇 달간의 어두운 시간도 국민들은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무쪼록 공소관들께서 무엇이 진정한 공소관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사명을 다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그런 큰일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내하면서 참아 내신 국민의 힘과 또 슬기로운 결단으로 오늘 이 공소청을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이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내고 자리 잡

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성운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최혁진 추미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권한대행 기우중

#### 【보고사항】

#### ○행정입법 제출

| 구분 | 공포번호 | 행정입법명 | 소관부처 | 공포일자 |
|----|------|-------|------|------|
|----|------|-------|------|------|

| 구분   | 공포번호    | 행정입법명          | 소관부처 | 공포일자         |
|------|---------|----------------|------|--------------|
| 대통령령 | 제36164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법무부  | 2026. 3. 10. |
| 대통령령 | 제36187호 | 행정기본법 시행령      | 법제처  | 2026. 3. 19. |
| 부령   | 제11110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법무부  | 2026. 3. 11. |

○보고서 제출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

(2026. 3. 16. 대검찰청 제출)